

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2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.

라.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- 1)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2)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3)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마.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바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최근 3년[기간 계산 시 법 제28조제6항(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]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4호	경고	등록취소	
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매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(불량으로 2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본다)	법 제31조제1항제5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다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(損壞)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6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라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7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
마.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8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바.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8	법 제31조제1	영업정지	영업정지	등록취소

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	항제9호	1개월	3개월	
사. 최근 2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2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
아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(損壞)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3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자.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,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,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(이하 이 표에서 "기술자"라 한다)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4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
차.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5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카.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6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